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14
------------	-----

2026. 4.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정현미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및 대피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제5조)
- 대피장소 표지판의 설치 및 대피안내요원 지정 등을 규정
(안 제6조~제7조)
- 대피 정보의 공개 및 대피명령 발령을 규정(안 제8조~제9조)
- 위험구역 설정 및 강제대피조치를 규정(안 제10조~제11조)
- 주민 및 대피안내요원 등의 대피교육·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전입니다.
최근 각종 재난이 다양화·대형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민 대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대피관리계획 수립, 대피장소 지정, 대피정보 공개, 대피 명령 및 강제대피, 교육 및 지원 등 재난 대피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존 재난안전 관련 조례에서 분산되어 있는 대피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된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재난 상황에서 주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15
------------	-----

2026. 4.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원주영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지원을 통해 남양주시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제4조)
-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을 규정(안 제5조~제7조)
- 위원의 임기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9조)
- 비밀준수 및 협력사업의 추진을 규정(안 제10조~제11조)
- 포상 및 준용 등을 규정(안 제12조~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자족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존의 투자 유치 중심 조례와 달리 공공기관 유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등의 범위를 법령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유치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조성,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협력사업 추진 등 유치 전 과정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두어 유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점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유치활동 지원과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 할 경우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이나 형식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16
------------	-----

2026. 4.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정현미 의원 등 6명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해킹·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보안기능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
 -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 (안 제3조)
 -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를 규정 (안 제5조)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 설치기준을 규정 (안 제6조)
 - 망분리 등 보안 강화 조치를 규정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 및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보안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전입니다.
- 최근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설비가 확대되면서 단지서버, 세대단말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기가 연결됨에 따라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등을 통해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조례가 주로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에 비해, 금번 개정안은 망분리 등 보안 강화 조치를 명시하고 필수설비 및 설치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보안 중심의 관리체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를 구체화하고 보안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망분리 등 보안 강화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보안 중심의 관리체제로 발전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기술기준과 연계하여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향후 공동주택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인 기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주거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917
------------	-----

2026. 4.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한근수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공지능사회의 제도적·윤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원칙(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대응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신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정책 기반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은 기본원칙 설정, 시장의 책무 명확화, 기본 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입법적 의의가 인정됩니다.
- 아울러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29
------------	-----

2026. 4.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특례 발굴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건의 성숙도와 회의의 시의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회의 운영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등 특례추진단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임단원의 유고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 규정 마련(안 제8조제5항)
: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잔여 임기로 함
- 띄어쓰기 오기 정정(안 제8조제6항)
- 회의 개최주기 조정 및 서면 의결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현행) 분기별 1회 개최 → (개정) 반기별 1회 개최, 서면 회의 규정 마련
- 비밀유지 조항 신설(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추진단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 전임단원 유고 등의 상황에 새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 규정을 마련하고, 회의 개최주기를 반기 1회로 조정하는 한편, 필요시 서면 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여 안건 처리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 발굴 과정에서 파악되는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여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추진단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제고하는 등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추진단 운영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자치분권 특례 발굴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비라 사료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 사 보 고 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31
------------	-----

2026. 4.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정부·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불부합 용어 등 51건의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자치법규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제24조)

- 1) 「산림보호법」 → 「산림재난방지법」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3)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4) 상위법령 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의 개정 등

○ 정부·시 조직개편 반영(안 제25조~제42조)

- 1) 2025년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 2) 시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등)

○ 행정안전부 선정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안 제43조~제44조)

- 1)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서류 명칭 정비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문장 정비 등(안 제45조~제51조)

- 1) 각호의1 → 각v호의v어느v하나
- 2) 위촉이v해지v된다 → 위촉이v해제된다
- 3)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 10분의 6을 초과하지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정부 및 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용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51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이번 일괄개정안은 인용 조문의 현행화, 부처 명칭 변경,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또한, 다수의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개별 조례별 개정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간 불일치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32
------------	-----

2026. 4.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위임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한정되었던 기존 조례를 행정규제 합리화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기존)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
 -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단일 규정 조례에서 규제 합리화 전반에 대한 관리 조례로의 개정
 - 규제등록 제도 구체화(안 제4조)
 - 규제의 재검토 기한 명시 및 조치 이행 의무 신설(안 제15조)

- 시민 대상 규제합리화 공모전 등의 근거 마련(안 제17조)
- 규제신고센터의 명문·법제화(안 제18호)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위임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위원회 중심의 운영 규정을 규제합리화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로 확대·정비하여 보다 종합적인 규제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주요 내용은 규제의 정의 및 범위, 규제심사 절차, 위원회 운영 등 상위 법령에 따른 규제 관리 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규제 관리의 일관성과 제도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명시한 제15조와 시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합리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 제17조는 규제의 지속적인 정비와 참여 기반 확대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규제합리화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규제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입법적 의의가 인정됩니다.
- 다만, 신규로 도입된 재검토기한 제도와 공모 방식의 운영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이행과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참여 확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 사 보 고 서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

의 안 번 호	933
------------	-----

2026. 4.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남양주왕숙지구에 수용된 기업의 보상금(평당 300만원대)과 재정착할 기업이전단지의 분양가(800만원대) 격차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체의 원활한 이전과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협약내용
 - 협약대상: 6개 금융기관(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 금융기관 최대 금리 제한을 통한 기업 금리 부담 경감
 - 市의 이차보전 (2년형 이차보전을 1.7%, 3년형 이차보전을 1.4%)
 - 기타 왕숙신도시 기업재정착 점프업(Jump-Up) 상생금융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전반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원(안)

- 상 품 명: 왕숙신도시 기업재정착 점프업(Jump-Up) 상생금융
- 지원대상: 남양주왕숙 기업이전단지 분양계약 체결 기업
 - ※ 입주요건 충족(제조업 등 5개 업종) 및 토지 수분양 신청 기업
- 용자규모: 800억 원 (금융기관 협조용자)
- 용자한도: 기업별 시설자금 최대 30억 원
- 지원내용: 토지 분양 중도금 이차차액보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

구 분	2년형	3년형	비 고
이차보전율	1.7%	1.4%	
기업별 최대지원금액	102백만 원	126백만 원	전체 용자기간 30억 지원 기준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체결안은 남양주왕숙지구 개발로 인해 수용된 기업이 보상금과 기업이전단지 분양가 간의 차이로 자금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차차액보전 방식의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이전과 조기 재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금융기관 협조용자를 통해 기업당 최대 30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시가 일정 비율의 이자를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수조건을 배제하도록 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한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금융지원은 기업 이전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전 지연이나 타 지역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기반 유지와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정책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사업은 이차보전 방식의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과 사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이 실질적인 기업 재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34
------------	-----

2026. 4.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시세 감면 조례 조항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여 감면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 기준 정비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명시 : 최초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경감(안 제8조)
- 시세 감면 조례 감면 기한 연장
 - 감면 기한 연장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대상 조항 :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2조)
 - 문화유산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4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9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조항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여 감면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재산세 경감률을 최초 5년간 50퍼센트, 이후 3년간 25퍼센트로 구체화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대한 시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개정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존 감면제도의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감면 대상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익적 목적 달성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 음

심 사 보 고 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 안 번 호	935
------------	-----

2026. 4.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변경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의회의결을 받아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남양주시 고시 제 2025-496호, 2025. 12. 4.)로 변경된 도시지역 전체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결정 고시
 - 전체 도시지역 : 242,754,141㎡(331,120㎡ 증가)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대상 :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 과세방법 :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부과고지(세율 1.4/1,000)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남양주시 고시 제 2025-496호)로 변경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해 우리 시 도시지역 면적은 기존보다 331,120㎡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도시지역 면적은 242,754,141㎡로 우리 시 전체 면적 대비 약 52.9%에 해당함. 변경된 도시지역에 대해서 기존 재산세액에 도시지역분(세율 1,000분의 1.4)을 합산하여 부과하게 되며
- 이러한 조치는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세제에 반영하여 과세 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시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재정 부담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도시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지역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36
------------	-----

2026. 4.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6년 상반기 전면 개방예정인 남양주시 몽골문화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시설 목적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 문화향유 공간으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위치(안 제1조~제2조)
 - 몽골문화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 목적 및 시설의 위치 규정
- 관람시간, 휴관일, 관람료 등, 행위의 규정(안 제3조~제6조)
 - 관람 시간과 휴관일, 관람료 감면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용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 제한 규정

- 관람시간 : 09:00 ~ 18:00
- 휴 관 일 :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 관 랐 료 : 없음 ※ 추후 입장객 추이에 따라 유료화 결정

- 대관, 대관의 제한, 공연·프로그램 운영 등(안 제7조~제9조)
 - 공연장 시설 대관 및 제한 기준과 공연·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 홍보 등 및 손해배상 책임(안 제10조~제11조)
 - 몽골문화촌 홍보용품 제작과 시설 훼손 시 손해배상 책임 규정
- 관리·운영의 위탁 및 준용(안 제12조~제13조)
 -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및 관련 규정 준용 사항 명시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조례안은 몽골문화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 관광시설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주요 내용은 시설의 설치 목적과 위치를 명확히 하고, 관람시간·휴관일·관람료 등 기본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이용행위 제한, 공연장 대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손해배상 책임, 관리·운영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은 공공 문화·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사전에 정립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입법적 의의가 인정됩니다.
- 향후 인접한 가족쉼터 공공캠핑장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운영 및 몽골과의 문화교류 협력이 확대될 경우, 몽골문화촌은 특화된 체험공간으로서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936-1
----------	-------

2026. 4. 17.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관련 조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문화 시설 이용 혜택을 보다 넓은 범위의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 나. 남양주시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명시한 관련 조례인 「남양주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인용 조항에 추가 명시하고, 용어를 '다자녀 가족'에서 '다자녀가정'으로 정비하여 시 행정 운영의 통일성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주요골자

- 가. 별표 관람료 감면기준 중 전액면제 대상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 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 나. 별표 관람료 감면기준 중 50% 감면 대상란 제2호를 삭제함.
- 다. 별표 관람료 감면기준 중 50% 감면 대상란 제3호를 제2호로 변경함.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관람료 감면기준 중 전액면제 대상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50% 감면 대상란의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관람료 감면기준(제5조제2항 관련)

감면비율	대상
전액면제	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12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사자가족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1. 13세 이상 18세이하인 사람 2. 하사 이하의 군인
20%	20인 이상 단체

□ 비고

1. 위 표에 따라 관람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면사유 중복 시 감면비율이 높은 한 가지를 적용한다.
3. 관람료 감면기준은 시 주최 기획공연에 한하며, 대관공연은 사용자의 규정에 따른다.

심 사 보 고 서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937
------------	-----

2026. 4.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능내역사문화공원은 전시관 개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직영 대비 효율성과 지속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시설활용도 및 운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 내용

-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정비, 안전관리 및 민원 처리 등 사무
- 시설유지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 시설관리 사무
- 지역주민,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무

(2)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능내역사문화공원

- 위 치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31-14번지 일원(4,949㎡)
- 주요시설 : 능내역사(전시관), 관리동, 주민공동이용시설(폐열차), 화장실, 주차장 등

(3) 민간위탁 기간

- 위탁기간 : 2026. 6. 1. ~ 2031. 5. 31. (5년)
-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

(4)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마을공동체)
 -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2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근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6.-나-1)수의계약 대상

(5)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능내역사문화공원 운영을 통한 사용료 수입으로 환경정비, 시설 개보수 및 공공요금을 지출·처리하도록 하여 위탁료 상계 처리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능내역사문화공원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위탁사무는 전시관 운영, 시설 유지관리,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6월부터 5년간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와 같은 민간위탁은 상시적인 관리와 운영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할 때, 직영 대비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역 주민이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실정과 수요를 반영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의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위탁 이후에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평가와 지도·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